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46
----------	-------

발의연월일 : 2026. 3. 10.

발 의 자 : 배준영 · 김승수 · 김은혜
김기웅 · 박정하 · 서명옥
이종배 · 최보운 · 김희정
이성권 · 임종득 · 안철수
윤한홍 · 이상휘 · 김 건
엄태영 · 박대출 · 김성원
의원(18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 및 경유 등 각종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제도를 두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의 30%의 범위(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0%)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동 지역 전쟁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 상승과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유류비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정해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5

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를 재도입하고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여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법률 제 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7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 ⑥ (생략)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u>2024년 12월 31일</u> 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과세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조정 후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⑦ ----- ----- ----- ----- ----- ----- <u>2028년 12월 31일</u> -----. - ----- ----- ----- ----- ----- ----- ----- ----- ----- ----- -----.
⑧ ~ ⑫ (생략)	⑧ ~ ⑫ (현행과 같음)